# 제956회 신설·강화규제 예비심사 결과

| no. | 법령명 | 규제내용 | 결과 |
|---|---|---|---|
| 1 |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<br>(금융위원회) | 1.순보유잔고 공시기준 강화(강화)<br>○ 증권투자자 순보유잔고 공시기준을 현행 순보유잔고비율이 발행량의 0.5% 이상인 경우에서, 0.01%(1억원 미만 제외)이상인 경우 또는 10억원 이상인 경우로 강화<br><br>▶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8조의3 | 1.비중요 |
| 2 |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 개정안<br>(국토교통부) | 1.모의비행훈련장치 인증성능기준 강화(강화)<br>○ 모의비행훈련장치에 대한 인증성능기준 규정<br><br>▶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 제6조,제4조, 제5조<br><br>2.모의비행훈련장치 변경검사 실시 사유 확대(강화)<br>○ 모의비행훈련장치 운영자가 변경검사(현 특별검사)를 받아야 하는 사유 추가(고장·결함 등으로 30일 이상의 수리를 하는 경우)<br>○ 모의비행훈련장치 운영자만 변경되는 경우 서면 신고 의무 부과<br><br>▶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 제9조 | 1.비중요<br>2.비중요<br>3.비중요 |

| no. | 법령명 | 규제내용 | 결과 |
|---|---|---|---|
| | | 3.모의비행훈련장치 종류 · 등급별로 지정허용범위를 명시(신설)<br>ㅇ 모의비행훈련장치의 용도별, 등급별로 운용할 수 있는 허용범위를 항공기 기동 · 절차 단위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규정<br><br>▶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 제11조 | |
| 3 | 손해평가 재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에 관한 지침 제정안<br>(농림축산식품부) | 1.이의신청 내용의 확인 및 처리(신설)<br>ㅇ 농어업재해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보험사업자의 손해평가 재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시 보험사업자등이 준수해야할 세부규정 마련<br>– (신청내용의 확인) 이의신청에 따른 손해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손해평가 인력의 자격을 제한하고, 사진 또는 영상녹화 기록물을 반드시 제출하도록 규정<br>– (의견제시) 이의신청을 담당하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이의신청에 대한 의견을 보험사업자에게 반드시 전달하도록 규정<br>– (이의신청의 처리) 보험사업자에게 이의신청 의견서 내용을 수용할 경우 결과에 반영하도록 하고, 처리결과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<br><br>▶손해평가 재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에 관한 지침 제4조,제5조,제6조 | 1.비중요 |

| no. | 법령명 | 규제내용 | 결과 |
|---|---|---|---|
| 4 |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<br>(국토교통부) | 1.무량판 구조 안전관리 강화(강화)<br>○ 무량판 구조가 지배적인 층이 있는 경우 특수구조 건축물로 지정(안 제2조제18호)<br>– 지배적인 층이란 기둥의 하중 지지면적(단면적)이 해당 층 전체 하중 지지면적(단면적)의 25% 이상인 층을 말함<br>– 지정 시 구조안전에 대한 지자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며 (시행령 제6조의3), 공정 완료 시 사진 · 동영상 기록(시행령 제18조의2)<br><br>○ 건축주는 설계자가 작성한 구조안전확인서를 착공신고 시 허가권자(지자체)에게 제출(안 제32조제2항)<br>– 안 제2조제18호에 따라 특수구조 건축물에 포함되므로 건축구조기술사도 구조안전확인서에 함께 서명 · 날인(시행령 제91조의3)<br><br>○ 무량판 구조가 지배적인 지하층의 상부 슬래브배근 작업 완료 시 감리중간보고서를 작성(안 제19조제3항)<br>– 안 제2조제18호에 따라 특수구조 건축물에 포함되므로 건축구조기술사도 공사 현장 확인 후 감리중간보고서에 함께 서명 · 날인(시행령 제91조의3)<br><br>▶건축법 시행령 제2조,제19조제32조 | 1.비중요 |

| no. | 법령명 | 규제내용 | 결과 |
|---|---|---|---|
| 5 |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<br>(국토교통부) | 1.차량총중량등(신설)<br>○ 초소형특수차의 차량중량 한계를 1,100킬로그램으로 규정<br><br>▶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<br><br>2.사고기록장치(강화)<br>○ (사고기록장치 작동 항목) 보행자·자전거 등과 충돌시 보행자나 자전거 탑승자 등(이하 '보행자등')의 상해를 완화하기 위해 자동차 외부에 전개되도록 설계된 안전장치가 작동되는 경우 추가<br><br>○ (사고기록장치 장착 일반기준) 제56조의2 제1항 각호 중 먼저 발생한 사고의 운행정보를 기록하되, 이후 발생한 다른 사고의 운행정보에 의해 덮어쓰여지지 않을 것<br>– 또한, 비가역안전장치*가 장착되지 않은 경우, 0.15초 이내에 진행방향의 속도변화 누계가 시속 25킬로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다른 사고의 운행정보에 의해 덮어쓰여지지 않을 것을 규정<br>– 운행정보 기록의 최소횟수를 2회 이상에서 3회 이상으로 확대 | 1.비중요<br>2.비중요 |

| no. | 법령명 | 규제내용 | 결과 |
|---|---|---|---|
| | | ○ (사고기록장치 기록 항목) 기록항목 관련 장치 또는 센서가 차량에 장착되어 있지 않거나 기록시점에 작동하지 않은 경우 기록하지 않을 수 있으며, 그 이유가 장치 또는 센서 고장인 경우 사고기록장치에 고장상태를 기록하도록 규정<br>– (필수 기록항목) 선택 기록항목(별표5의25 제2호 나목) 일부를 필수 기록항목(별표5의25 제2호 가목)으로 편입*하고, UN R160과 조화시키기 위해 UN R160에 따른 새로운 항목들을 신설**하면서 필수 기록항목 갯수를 55개(현행 15개)로 확대<br>* 측면방향속도 관련 수치, 엔진 회전수(RPM), 조향핸들 각도, 에어백 전개 시간 등<br>** 뒷자석 좌석안전띠 착용여부, 진행·측면 방향 가속도, 비상제동장치 작동 여부, 보행자 보호 시스템 전개시간 등<br>– (선택 기록항목) 마스터실린더 제동압력 또는 휠 실린더 제동압력을 추가하면서, 필수 기록항목으로 편입된 항목을 삭제하여 항목 개수를 12개(현행 30개)로 축소<br>– (각주) 비상호출 기능(eCall), 마스터실린더를 비롯해 신설되는 항목의 정의를 추가하고, 항목의 기록생략가능 여부 등을 규정<br><br>▶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의2 | |

| no. | 법령명 | 규제내용 | 결과 |
|---|---|---|---|
| 6 |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 개정안<br>(국토교통부) | 1.항공운송사업자등의 안내 의무 사항(강화)<br>ㅇ 항공사가 위탁수하물의 누락, 미사용항공권 환불 정보 등을 소비자에게 안내하도록 의무 부과<br><br>▶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 제5조,제6조 | 1.비중요 |
| 7 | 해외농업·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개정안<br>(농림축산식품부) | 1.비상시 해외농업·산림자원의 반입명령(신설)<br>ㅇ 해외농업 · 산림자원의 반입명령을 내릴 수 있는 ’ 중대한 위기가 발생하는 경우 ‘의 기준 및 절차를 규정(시행령안 제27조의2)<br>– (제1항~제2항)중대한 위기가 발생하는 경우<br>• 농 · 축 · 임산물의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여 국민경제에 심각한 영향이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<br>• 농 · 축 · 임산물의 공급이 심각하게 부족하여 국민경제에 심각한 영향이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<br>– (제3항)반입명령 대상 비상사태<br>•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에 따른 재난 및 해외재난<br>• 환율 또는 국제 원자재가격의 급등과 같은 긴급한 재정 · 경제상 위기<br>– (제5항)반입명령을 받은 해외농업 · 산림자원 개발사업자는 이행계획서를 제출<br><br>▶해외농업·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제27조의2 | 1.비중요 |

| no. | 법령명 | 규제내용 | 결과 |
|---|---|---|---|
| 8 |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 개정안<br>(식품의약품안전처) | 1.포장의 기재·표시 간소화 제외 대상 화장품 지정 등(신설)<br>○ 속눈썹 펌제를 화장품 유형으로 추가하고, 속눈썹 펌제에 대한 화장품 유형별 주의사항* 신설<br>* 자가 사용 자제, 정해진 용법·용량 준수, 특이체질·질환자 등 사용 자제 당부 등<br>○ 속눈썹 펌제 및 외음부세정제를 포장 기재·표시 간소화 제외 대상 화장품으로 지정(안 제2조)<br>▶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 제2조, 별표1 | 1.비중요 |
| 9 | 에어로졸식 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<br>(소방청) | 1.에어로졸식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(강화)<br>○ 에어로졸식 소화용구의 일반구조(작동력, 허용공차 등) 및 간헐방사시험에 관한 기준 신설<br>○ 에어로졸식 소화용구의 용기재질, 내부용적 허용범위, 각종 시험(내식시험, 방사시험, 온도반복시험 등) 등에 관한 기준 강화<br>▶에어로졸식 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5조,제3조,제4조,제5조,제7조,제8조,제8조의2,제10조,제10조의2,제11조,제12조,제14조 | 1.비중요 |

| no. | 법령명 | 규제내용 | 결과 |
|---|---|---|---|
| 10 | 식품용기 사용 재생원료 기준 개정안<br>(환경부) | 1.선별사업자, 재활용사업자의 준수사항(강화)<br>○ 재활용 공정 투입원료 기준(제4조)을 ' 별도 수거 · 선별 투명페트병 ' 외 ' 혼합 수거 · 선별 투명페트병 '까지 포함하여 범위를 확대하고,<br>– 혼합 수거 · 선별 페트병을 식품용기용 재생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△선별사업자가 갖춰야할 시설 · 관리기준 및 △재활용사업자가 준수해야할 시설 · 관리기준, 재활용 설비 및 운용기준 등 신설<br><br>▶식품용기 사용 재생원료 기준 제5조,제4조 | 1.비중요 |
| 11 |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개정안<br>(행정안전부) | 1.감사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 변경(강화)<br>○ 외부전문가 감사위원 자격에서 배제되는 최근 중앙회·금고 근무 기간을 '최근 2년 내'에서 '최근 3년 내'로 강화<br><br>▶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24조의2<br><br>2.금고감독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 변경(강화)<br>○ 금고감독위원회의 위원 자격요건 중 ① '중앙회 또는 금고 10년 이상 경력' 요건에서 금고 경력자는 배제하고, ②배제되는 최근 중앙회 근무경력 기간을 '최근 2년' 내에서 '최근 3년' 내로 강화<br><br>▶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51조의3 | 1.비중요<br>2.비중요 |